

# 세계지방자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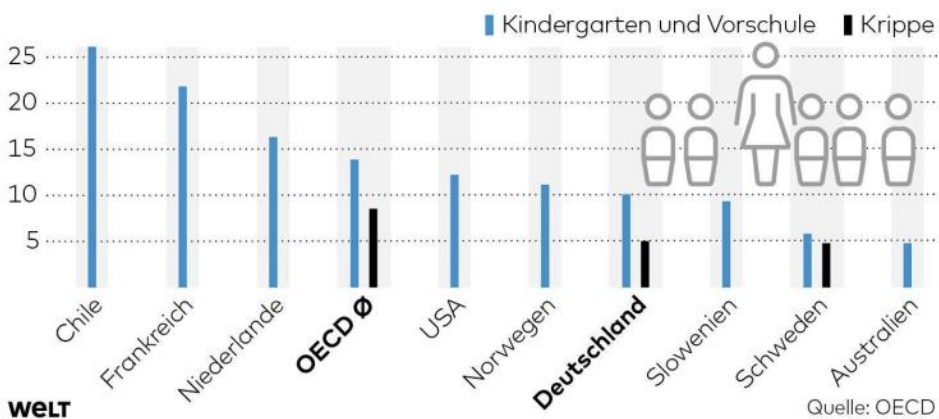
- (독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영유아보육 현황 및 자원분담
- (미국) 텍사스 주 보육 서비스 자원분담 구조 및 방식  
: 아동양육 및 발달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
- (일본) 일본의 아동 보육 관련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자원분담 구조
- (일본) 일본의 아동·육아 지원신제도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영유아보육 현황 및 자원분담

### 독일 영유아보육 개요 및 현황

- 독일의 영유아보육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만 3세 미만과 만 3세 이상 취학 전 연령으로 구분됨
- 만 3세 미만의 아동돌봄시설은 탁아소(Krippe)로 주로 불리며, 만 3세 이상 취학 전 연령은 유치원(Kindergarten)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틀어 아동일일보육시설(Kindertagesstätte) 또는 흔히 줄여서 KiTa로 불림
- 기본적으로 독일의 영유아보육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부모의 소득 또는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주별, 도시별로 다르게 책정됨
- 보육비는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50,000유로의 소득을 가진 부모의 경우 123유로에서 280유로의 범위이며, 베를린에서는 2018년 8월 1일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 So viele Kinder kommen auf einen Erzieher im Kindergarten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65789005/Was-Sie-wissen-sollten-bevor-Sie-ueber-Ihre-Kita-meckern.html>

| 그림 1 | OECD 보육종사자 1인당 영유아 수 (2017)

- 독일의 영유아보육시설은 세계에서 최상위급인데, 3세 미만의 탁아시설의 경우는 스웨덴에 이어서 두 번째, 3세 이상의 보육시설의 경우는 호주, 스웨덴,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시설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연방 법률

- 연방 사회보장법(Sozialgesetzbuch) 제8권에서는 영유아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Kinder-Jugendhilfe)을 명시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는 제24조에서 일일보육시설 및 영유아 돌봄 촉진에 관한 권리(§ 24 Anspruch auf Förderung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음

#### 사회보장법 제8권 - 영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제24조 일일보육시설 및 영유아 돌봄 촉진에 대한 권리

(1)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동은 관련 시설 또는 일일가정보육을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1. 아동이 자립하고 책임감 있고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한 경우
2. 양육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 a. 유급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채용되거나, 구직 중인 경우
  - b. 직업 훈련 과정, 학교 또는 대학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 c. 이 법 제2권에 따라 근로자로 편입되는 경우

아동이 한 명의 양육권자와만 동거하는 경우, 이 사람이 법적 보호자를 대신한다. 일일 지원의 범위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르다.

(2) 만 1세가 된 아동은 만 3세 이전까지 가정보육 또는 아동돌봄 시설에서 조기 아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항 3문이 이에 유효하다.

(3) 만 3세가 된 아동은 취학 전까지 일일보육시설에서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공 청소년 지원기관은 이 연령대가 필요에 따라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의 아동은 아동돌봄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6) 추가적인 주(州)법은 이 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3세 미만 아동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은 위의 사회보장법 제8권 개정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1세 이상 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위한 보육 권리 보장 및 정원의 확대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일일보육확충법(Tagesbetreuungsausbaugesetz)에서는 3세 미만 영유아에 필요한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의 질적인 향상, 보육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다양한 가정보육 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음

- 아동보육 확장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법(KitaFinHG)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주 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을 명시한 법률로, 2008~2013년은 21억 5천만 유로, 2013~2014년은 5억 8천만 유로, 2015~2018년은 5억 5천만 유로, 2017~2020년은 11억 2천만 유로, 2020~2021년은 10억 유로의 연방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이 연방 예산은 보육시설의 신설, 확장, 이전, 개수, 장비 투자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장비 투자에 대한 사항은 각 주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

### 관련 주 정부 법률(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앞서 언급된 사회보장법의 세부실행을 위한 법률로 아동교육법(Kinderbildungsgesetz NRW)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 법은 2019년 11월 전면 개정되어 영유아보육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더 많은 보육종사자에게 자금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 2021년부터 매년 약 7억 5천만 유로의 재정지원을 통해 10,000개 이상의 보육시설에서 직원고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
  2. 시설과 종사자에 대해 매년 비용상승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실제 비용 인상과 세금 인상을 반영하여 시설 및 종사자의 재정 안전성을 확보
  3. 가족센터<sup>1)</sup>와 plusKITA, 언어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기회 보장
    - 가족센터당 연간보조금 인상과 언어교육 및 plusKITA<sup>2)</sup>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1억 유로로 확대
  4. 근무시간의 법적 규정 및 보장
    -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향상
  5. 보육관련 전문가 자문을 위한 보조금
    - 보육시설의 보육품질 향상과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보육시설(1,000유로) 및 종사자(500유로)에 대해 지원
  6. 종사자의 훈련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차연도 8,000유로, 2, 3차연도 4,000유로의 교육훈련비

1) 가족센터(Familienzentrum)는 부모가 각종 아동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보육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문제해결과 교육 소외계층 및 지역의 사회적 참여 촉진 등 모든 계층에 더 평등한 기회를 얻도록 하고 있음

2) plusKITA는 공정한 교육을 위한 NRW주의 특별한 보육기관으로 저소득층, 이민 배경의 자녀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용을 보육시설에 지원

7. 가정보육의 개선

- 보육 준비시간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 보조금 확대를 통해 가정보육의 질을 강화

8. 추가적인 보육비 면제

- 아동보육시설의 취학 전 마지막 2년 보육비 면제(현재 1년 보육비 면제에서 확대)

9. 필요 보육공간의 확보

- 보육 수요와 필요가 있는 곳에 약 1억 유로를 지원하여 보육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

10. 보육서비스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에 재정적 지원

-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해 특별한 시간(이른 아침, 저녁, 주말 및 공휴일)의 보육 기회를 제공

**영유아보육 주요 사업 및 재원분담 현황**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분야의 예산이 약 1.5억 유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이 영유아보육에 편성되어 있음

| 표 1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분야 2021년 세입항목

2021년 세입항목	예산 (유로)	비율(%)
KitaFinHG에 따른 연방교부금	108,957,200	71.10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30,000,000	19.58
연방교부금	10,412,800	6.79
준비금	2,234,000	1.46
기타 세입	1,500,000	0.98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주 정부 환급금	147,000	0.10
계	153,251,000	100.00

- 아동보육 분야 세출항목을 살펴보면, NRW주의 아동조기교육촉진법(KiBiz)에 따른 세출이 74.7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방예산은 아동보육 확장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법(KitaFinHG)에 따른 교부금뿐이며, 대부분 주 정부 예산이 투입됨

표 2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아동보육 분야 2021년 세출항목 (청소년 분야 제외)

2021년 세출항목	지출 (유로)	비율(%)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세출	2,924,588,200	74.79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반환금	425,132,500	10.87
아동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 투자를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115,000,000	2.94
KitaFinHG에 따른 연방교부금	108,957,200	2.79
사용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plusKITA 보조금	101,250,000	2.59
가정보육 보조금	81,131,400	2.07
가족센터 보조금	62,865,900	1.61
NRW주 아동조기교육촉진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연화를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 게마인데 예산 20% 매칭	50,000,000 (10,000,000)	1.28
특수한 경우의 아동보육을 위한 게마인데 교부금	21,000,000	0.54
기타 보조금	9,200,000	0.24
아동조기교육촉진법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보조금	7,876,400	0.20
기타 게마인데 교부금	3,400,000	0.09
계	3,910,401,600	100.00

## 정리

- 사회보장법 제8권 제24조에서 제6항에서 나타나듯이 독일의 영유아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법률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만 주 정부 법률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강력한 연방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영유아보육 예산이 주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보육 확장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법에 따른 연방교부금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주 정부의 예산임
- 다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아동교육법에 명시된 보육서비스 유연성을 위한 지원금 등 일부 교부금에 대해서만 기초지자체인 게마인데가 전체 지원금의 20%를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이는 독일의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의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독일에서는 의무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주 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지며, 교육 예산 또한 대부분 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특성이 영유아보육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장인성 통신원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drong85@naver.com